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차)

| | | | |
|--------------|---|------|--------|
| 개최일시 | 2014.1.10(금) 16:00~21:30 | 회의장소 | 진관 휴게실 |
| 참석자 (13명) | 오종근(교무처장), 신경식(기획처장), 조경원(총무처장), 신하윤(학생처장), 이명휘(재무처장), 서미옥(예산팀장), 성희연(총학생회장), 강다영(총부학생회장), 고은희(건강과학대학대표), 강다영(사범대학대표), 유미림(조형예술대학회장), 조수민(대학원학생회장), 유혜련(외부전문가) | | |
| 불참자 | 없음 | | |
| 안건 | 적립금, 2014년도 예산안, 재정 현황에 대한 설명 | | |
| 내용 | <p>□ 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원 점검을 한 뒤, 201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2차 모임을 시작하다. 신경식 처장은 일정상 뒤늦게 참석하다. - 위원장은 2차 회의부터는 양측에서 서기 1명씩이 선임되었음을 알리며 양측 서기를 소개하다. <p>□ 회의내용</p> <p>1. 1차 회의록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측 위원이 작성하고 학생위원이 수정한 회의록 합의를 위한 토론을 하다. 학생위원이 논의의 근거가 충분히 회의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하다. 수정한 회의록 중에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에 합의하다. - 학생위원이 회의내용 공개 원칙의 부분에서 일반 구성원에게 회의록을 통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합의한 적이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회의록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기로 합의하다. 또한 회의내용 공개범위에 관한 안건을 금번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다. <p>2. 논의사항</p> <p>가. 회의내용 공개범위</p> | | |

(1) 학생위원이 회의내용 공개에 대한 문제를 본 회의 안건에 앞서 논의하기를 요청하다. 학생위원은 회의록이 공개되기 이전에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운위 뿐만 아닌 모든 학생에게까지 공개되어야 함을 주장하다.

(2) 어느 일방의 시각에서 대자보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회의내용이 전달될 경우 진의가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학교 측 위원들이 말하다. 중운위나 단운위 등 각 회의체에서는 합의된 내용에 한해 전달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회의록을 통해 공개하되, 회의록은 업무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작성할 것을 제안하다.

(3) 학생위원이 회의록 공개 이전에도 회의 안건과 같은 정확한 사실 관계와 관련한 부분은 모든 학생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다.

(4) 합의사항 : 학생 회의체에서는 회의록 공개 전이라도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의 교내 구성원들에게는 회의록을 통해 공개한다. 단, 빠른 공개를 위해서 회의록은 업무시간 기준 48시간 이내에 작성하고, 사실에 대한 내용은 48시간 이전에도 공개할 수 있다.

나. 기금 및 재정 현황에 대한 설명

1) 기금

가) 적립금의 정의와 적립목적, 조성과정, 인출 및 사용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립금 보유의 적정성, 사용의 합목적성, 조성의 합리성이 지켜져야 함을 설명하다. 연구·장학·건축·퇴직·기타의 5가지 목적별로 구분된 기금이 적립·인출되도록 관리됨을 설명하다. 현재의 기금이 미래에도 동일한 구매력을 가지기 위한 실질가치가 보존되어야 하며, 장학금 지원, 건축비 지원, 연구비 지원, 학교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세대간 공평배분이 가능한 사업을 위하여 인출되도록 원칙을 가지고 적립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을 설명하다. 국내 사립대학은 해외의 명문 사립대학과 비교할 때, 재정기반이 취약하며, 대학의 자율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립금은 필수적인 자산임을 설명하다.

나) 학생위원이 학교에서 생각하는 적정 적립금이 얼마인지 질의하다. 학교위원은 절대적인 목표 규모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다.

다) 학생위원이 건축비 사용내역 중 기금회계에서 지출한 내역과 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한 것과의 차이를 질의하다. 학교위원은 건축비 중 신축이나 개보수를 통해 자산적 가치가 증가하는 것과, 당해년도 경상적인 유지보수비 등을 구분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책정하여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하였음을 설명하다.

2) 2014년도 예산안

가) 2013년 10월부터 대학 및 부서·기관이 제출한 2014년 예산(안)을 취합하여 이를 기초로 지출규모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였음을 설명하다.

나) 2014년도에는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의 축소와 이자율의 하락으로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인건비를 비롯한 관리비 등의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가 예상되어, 각 기관이 제출한 예산을 집행하기에 약 186억원의 수입이 부족한 상황임을 설명하다.

3) 자료 제공 요청

가) 학생위원이 예산안 항목이 커서 등록금 심의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2014년도 등록금 심의를 위해 2014년도 예산안 자료와 함께 추가적으로 세부항목이 나온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

나) 학교위원은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으나, 2014학년도 등록금 심의를 위해 위원들에게만 2014년도 예산안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다(회의 후 위원들이 회의자료를 가지고 가다).

다) 오늘 2차 회의에서 학생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재무처에서 1월 13일(월)에 공문을 통해 자료 제공 여부와 자료 제출 형식

을 답하겠다고 하다.

3. 다음 회의 내용

- 등록금 심의를 위한 예산안 심의

4. 회의 내용 정리

(1) 합의된 내용은 회의록 공개 전이라도 학생들의 회의체에서는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공개 가능하도록 한다.

(2)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개는 회의록을 통해서 하며, 회의록은 업무시간 기준 2일(48시간) 안에 확정 및 공개 하도록 양측이 노력한다. 또한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회의록 공개 이전에도 게시할 수 있다.

(3) 학생위원의 자료 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재무처에서 1월 13일(월) 오후 2시까지 회신하고, 3시 30분 예산팀에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기로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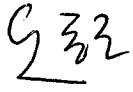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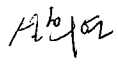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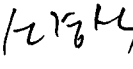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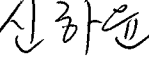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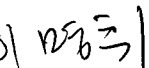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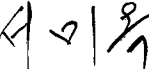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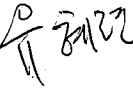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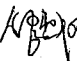
(4)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예산안에 관해 논의하기로 한다.

□ 폐회

위원장은 3차 위원회를 1월 14일(화)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확인한 후 9시 30분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14년 1월 10일

| 확 인 | 직 위 | 성 명 | 서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 | 위원장 | 오종근 |  | 위 원 | 성희연 |  |
| 위 원 | 신경식 |  | 위 원 | 강다영 (총부학생회장) |  | |
| 위 원 | 조경원 |  | 위 원 | 고은희 |  | |
| 위 원 | 신하운 |  | 위 원 | 강다영 (사범대학대표) |  | |
| 위 원 | 이명휘 |  | 위 원 | 유미림 |  | |
| 위 원 | 서미옥 |  | 위 원 | 조수민 |  | |
| 위 원 | 유혜련 |  | | | | |
| 작성 자 | 소 속 : 총 학 생 회 | | 성 명 : 성 희 연  | | | |